

#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 제정(안) 심의서

<b>1. 규정 개정 취지</b> -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43조의2(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) 신설에 따라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 제정
<b>2. 제정 규정</b> -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

[규정 전문]

##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

제 정 : 2026. 00. 0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43조의2에 의한 금강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신청대상)** ①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② 자진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 중 원활한 경영을 위해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**제3조(신청의 제한)** 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
3. 타 기관이나 산업체에 임용되는 자
4.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4조(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)**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교직원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정년 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공시)** ① 교학지원처장과 기획관리처장은 매 학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허가 인원, 신청 기간,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신청절차)** 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, 교원은 교학지원처장에게, 직원은 기획관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일은 매 학기 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조(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심사위원회)**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로 한다

③ 위원회의 개최 정족수 및 의결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**제8조(심사·결정)**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를 심사하고 총장에게 추천한다.

1.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교직원
2. 상위직 교직원
3. 장기근속 교직원

② 제1항제1호의 폐질상태라 함은 정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로서, 이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항과 의료보험 진료 의료기관장이 발급하는 진단서(소견서)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.

**제9조(결정통지)** 퇴직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.

**제10조(사직원 제출)**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대상자는 명예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수당지급시기)**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.

**제12조(사무관장)**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사무는 교원은 교학지원처에서, 직원은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13조(시행세칙)**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